

의안번호	제 415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박성원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20년 4월 13일

#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5
----------	-----

발의연월일 : 2020년 4월 13일

발 의 자 : 박성원,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이의영, 황규철

## 1. 제안 이유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 및 각종 현안에 대하여 민주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미래지향적인 충북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의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나. 위원회의 구성, 임기(안 제3조 ~ 안 제4조)
- 다. 위원장의 직무(안 제5조)
- 라. 위원의 의무, 제척·회피, 해촉(안 제6조 ~ 제8조)
- 마. 위원회 회의 운영(안 제9조)
- 바. 위원회 업무담당 부서 및 간사(안 제10조)
- 사.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협조 요청(안 제11조)
- 아. 의제별 위원회 구성(안 제12조)

자. 교육지원청 위원회 설치(안 제13조)

차. 위원회 심의결과 처리(안 제14조)

카. 회의 참석 위원 수당(안 제1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정책기획과 대외협력팀

라. 기 타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28호

2020. 4. 2. ~ 2020. 4. 8.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충북교육 주요 정책 및 교육현안에 대한 전문성 있는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충북교육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충북교육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3. 충북교육 주요 정책 추진 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4. 충북교육 주요 정책 홍보와 충청북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의제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시책 등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에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추천 2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연령, 성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2. 지역 시민사회 단체·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3.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충북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청소년
5. 그 밖에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심각하게 떨어뜨렸을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업무담당 부서 및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와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의제별 위원회)** ① 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전문 분야별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연구 및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안하는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제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교육지원청 위원회 설치)** ① 각 교육지원청에 지역 교육발전 방안과 민관협력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속으로 미래교육협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준용하여 해당 교육장이 정한다.

제14조(심의결과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조정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15조(수당 등) 교육감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1조제2항,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회의에 참석을 요청한 관련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 등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 □ 지방자치법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9. 8. 13.]

##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제2호

###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